

01 기획특집

- 포털사이트의 이미지제공 방식에 관한 저작권 등 침해 여부 판단 (남수진 변호사)

07 열려라 중국

- 도시와 농촌의 동표동권 선거권 보장 (경염동 중국 변호사)

10 생생 러시아

- 러시아주택분양제도 개관 III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14 최신법령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의 한시적 도입 등
-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제출 등
- 신용카드의 결제대상 확대 등
- 지방세 체계의 전면 개편 등

17 지평지성 소식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23 업무동향

- ㈜한성항공 회생계획인가 관련 회생절차상의 업무 대리 및 자문 제공
-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 PF 사업 관련 분쟁에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 미국기업 국내상장 승인 1호인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을 대리하여 상장 자문 제공
- 여의도 Parc.1 브릿지론 PF 성공적 수행

29 지평지성 단신

- 이춘원 변호사,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의 한국 Shipping & Maritime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 김성수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유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김성수 변호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법사위원으로 위촉

31 영입인사

- 이재성 변호사
- 김다희 변호사
- 주현철 미국변호사
- 임주영 호주변호사
-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기획특집)

포털사이트의 이미지제공 방식에 관한 저작권 등 침해 여부 판단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손해배상)



남수진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및 원심의 판단

가.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인물 및 풍경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창작적으로 촬영한 사진작품을 원고의 웹사이트(이하 "원고의 웹사이트"라 함)에 게시하고,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신의 사진작품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 피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이용자들은 검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미지에 대한 검색 결과는 ① 포털사이트 내부 서버에 올려져 있지 않은 일반 웹사이트 상에 있는 사진 등을 현출시키는 '외부이미지 현출 부분' ② 포털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사진 등을 현출시키는 '내부이미지 현출 부분'으로 각 분리되어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3)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의 검색서비스에서 '백두산' 등에 대한 이미지를 검색하면, ① 원고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중 백두산이 제목으로 붙은 사진(외부이미지

에 해당)과 ② 피고 서버에 일반 이용자들이 올린 원고의 사진(내부이미지에 해당) 등이 약 100픽셀X 75픽셀 크기의 썸네일(thumbnail) 형태로 목록화하여 보여지게 됩니다.

① 이때 외부이미지에 대한 썸네일을 선택(double click)하게 되면 웹사이트의 창이 상·하단으로 분리되면서 상단에는 검색결과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 목록이 나타나며, 하단에는 인터넷 이용자가 선택한 썸네일 이미지의 원래 웹페이지인 원고의 웹페이지가 각 나타납니다.

그런데 피고는 외부이미지에 대하여도 약 2년에 걸쳐 '해외이미지'라는 다른 카테고리를 통하여 썸네일을 선택하게 될 때 약 500픽셀 X 330픽셀(인쇄할 경우 약 17.64cm X 13.23cm에 해당, 이하 '상세보기 이미지'라 함)의 큰 이미지로 현출시키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② 내부이미지에 대하여는 위 썸네일을 선택하게 될 경우, 그 원래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에 연결되어 화면 중앙부에 상세보기 이미지가 보여집니다(피고는 이 사건 진행 중 내부이미지에 대하여도 외부이미지와 동일하게 썸네일 선택 시 바로 해당 블로그 또는 카페로 연결되도록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이 사건 사진이 업로드된 원고 또는 제3자의 웹사이트, 피고의 회원들의 블로그 등은 피고가 아닌, 원고 또는 제3자, 피고의 회원들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피고에게 수정, 삭제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는 이미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원래의 사진이 저장된 주소에 연결(link)하여 두었을 뿐 자신이 이 사건 사진을 관리, 통제하는 서버에 직접 복제하지는 않았고, 그 복제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이를 송신,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전시'란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이 저장된 주소에 연결(link)하는 방법으로 상세보기 이미지를 제공한 행위를 저작권법상의 전시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직접 복제, 전송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저작권법에서 정한 이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사진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성명표시권의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심 법원의 판단

그러나 2심 법원은 외부이미지 중 상세보기를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일부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이미지 검색 부분은 상·하단으로 구분하여 썸네일의 원본 이미지가 있는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방식은 링크 방식으로서 원고 사진의 복제나 전송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 등에 해당할 수 없다. 내부이미지 검색 부분은 피고가 그 회원들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외부이미지 중 상세보기 이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해당 이미지를 원고의 허락없이 복제한 후 크기를 변환하여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이용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상세보기 서비스가 제공된 2년 동안 복제권 및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 기간 동안 사용료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대상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가. 링크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조의 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외부이미지 검색 화면은 링크의 방식으로 원래의 웹페이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므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상세보기 방식에 의한 외부이미지 제공 부분

피고가 상세보기 이미지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원래의 사진 이미지 또는 적어도 이를 상세보기 이미지 크기로 축소, 변환한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각종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미지를 무작위로 검색·수집하여 그 썸네일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인터넷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목록화하여 보여주고, 인터넷 이용자가 다시 그 특정 썸네일 이미지를 선택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이미지를 상세보기 이미지로 축소하여 보여 주며, 그 하단에 원래 이미지가 위치한 인터넷 주소(URL), 파일 크기 등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른바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바, 피고는 상세보기 이미지 서비스에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링크를 제공하였을 뿐, 원래의 이미지, 또는 상세보기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전제로 하는 성명표시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내부이미지 제공부분

피고는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블로그 등을 통하여 내부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전자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위 게시판을 이용하여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사진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서버 등의 유형물에 저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 등을 직접 침해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로서는 저작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내부이미지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자동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수단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가 회원들의 게시판에 위 내부이미지들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위 내부이미지들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를 차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고, 피고와 회원들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없으므로 사용자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대상판결의 의미

대상판결은 포털사이트 검색서비스의 결과 현출물에 대한 기존 입장인 i) 일반적인 링크방식의 현출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전시·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ii)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한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특히 "인터넷 링크에 의하여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동일 서버 또는 다른 서버에 있는 이미지를 링크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의 특정한 위

치에 특정한 크기로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의 링크(소위 딥링크(deep link)에 해당)의 방식을 소개하면서,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상판결 이전의 '썸네일'에 대한 판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나24157 판결 등 다수)에서는 원본 이미지가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실제로 복제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지도 않으면서도, 포털사이트에서 현출되고 있음을 근거로 곧바로 복제 및 전송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었으나(기존 판례에서는 썸네일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복제 및 전송 여부를 기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4. 다운로드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손해배상

JS-Horizon

(열려라 중국)

도시와 농촌의 동표동권 선거권 보장 -2010년 중국선거법의 개정 성과와 문제-



경영동 중국변호사

중국헌법상 최고국가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의 개정, 기본 법률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심사비준 및 감독 등과 같은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난 3월 14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는 3,000명 정원 중 2,981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압도적인 다수의 표결로 <중화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함) 개정안을 통과하였으며, 국가주석령 제27호로 공포하여 당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연합통신,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들로부터 중국의 민주정치의 중요한 성과 또는 중국인권사업의 큰 행보로 평가받고 있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와 농촌 주민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불평등선거권을 해소하고 동표동권(同票同權)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와 농촌에서 동등한 인구비례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함으로써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의 지역평등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 선거방식이 아닌 대표대의제도와 간접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서 큰 정치적 행보이며 또한 도시화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첫 선거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6억 인구 중 도시 인구는 단지 13.26%를 차지하여 소수 지위에 있었으며, 노동자는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

습니다. 국가정치에서 노동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하고 산업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선거법은 농촌과 도시에서 선출된 매1명의 대표가 대표하는 인원수에 대하여 비율을 정하였는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인민대표대회)의 경우 8:1의 비율, 성과 직할시 경우 4:1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에 이르러 상기 비율을 4:1로 모두 통일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권의 불평등은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이익을 대표하는 인민대표의 인원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또한 경제, 정치, 문화, 과학기술,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농촌주민들의 이익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30년의 개혁개방을 통하여 중국은 점차 도시화발전단계에 진입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인구비율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 2008년에 이르러서는 46:54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배경과 확고하게 정립된 사회주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은 금번 선거법 개정의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의 개정을 통하여 농촌주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수가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수정전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의 비례가 1:4로서 3000명 전국인민대표 중 600명은 농촌 주민을 대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농민대표는 90여명에 불과한 바 동 수정안을 통하여 농촌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의 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됩니다.

또한 선거민이 선출한 인민대표가 대변하는 진실한 이익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선출된 인민대표가 각급 인민대표 대회에서 농민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 정책의 제정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선거민중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인민대표의 선출과 선거후보자의 선거자율경쟁 결여 등 제도적인 문제는 앞으로 계속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각주]

1.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57조
2.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제62조
3. 개정 전 선거법 제16조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쿼터의 대표를 선거 하여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매 1명의 농촌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가 매 1명의 도시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의 4배에 해당하는 원칙에 따라 쿼터를 배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선거법 제16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쿼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구수에 따라 매1명의 대표가 대표하는 도시와 농촌인구가 동일한 원칙과 각 지역, 각 민족, 각 분야에 모두 적절한 수량의 대표를 보증하는 요구에 따라 배분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주민의 동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4. 陳杰人, "中国应落实城乡选民均选权", <http://www.ftchinese.com/story/001031650> , 2010 년 3 월 20 일 검색
5. 雲南信息報, "同票同权只是城乡选举平权的基础", <http://www.ynxxb.com/content/2010-3/16/N91314385287/>, 2010년 3월 20일 검색

JS-Horizon

(생생 러시아)

러시아주택분양제도 개관 Ⅲ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관련링크](#) : 러시아주택분양제도 개관 I (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 1월호)

■ [관련링크](#) : 러시아주택분양제도 개관 II (지평지성 뉴스레터 2010. 2월호)

4. 지분건설 계약에 따른 담보 및 실행 절차

지분건설법이 정하고 있는 담보의 종류는 저당권과 연대보증입니다(제12.1조). 지분건설계약에 따른 피담보채무는 i) 지분권자가 납입한 대금 반환채무, ii) 손해배상채무 및/또는 위약금(벌금) 형태의 채무, 기타 계약 및 법률로 정한 대금지급채무입니다.

<저당권>

지분건설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분건설계약을 국가 등 록한 시점부터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대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설용 토지 및 해당 토지에 건축 중인 다세대 주택은 지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3조 1항).

그리고 미완공 대상물에 대한 사업자가 소유권을 국가 등록하는 경우, 국가 등록시점부터 미완공 대상물 역시 지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러시아법상 미완공 대상물(Объект незавершен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이란 새로이 건축되는 부동산으로, 아직 등기부나 기술대장에 접수되거나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등록법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건축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부동산의 건축 사실의 증명과 해당 부동산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권 증명서류를 기초로 하여 등기됩니다. 미완공 대상물을 거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해당 부동산 건설 토지사용권 확인 서류, 설계건축도서, 미완공 대상물 설명서 등을 근거로 하여 등기됩니다.

그런데 본 법률은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미완공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등록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지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얻어 미완공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국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다세대 주택 목록에 포함되는 주거공간 및 비주거용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 명의로 국가등록되는 시점부터 이들은 지분권자에게 담보설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가 첫 지분권자와 지분건설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 소유권 및 임대권, 건축중인 다세대 주택 등의 재산에 관하여 사업자의 기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권자로부터의 자금 조달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허용됩니다. 1) 사업자가 연대보증계약으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경우 또는 2) 토지 소유권 및 임대권, 건축중인 다세대 주택 등 재산의 저당권자가 은행인 경우로서, 3) 저당권자(은행)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통한 채권변제 동의서를 수령하고, 4) 당사자들이 지분건설 목적물 수령증에 서명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첫 지분권자와 지분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소유권 및 임대권, 건축중인 다세대 주택 등의 재산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행으로부터 담보물을 통한 채권변제 동의서를 수령하고, 지분건설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소멸 동의서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행의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조달자금액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대출금의 합계액이 사업

신고서에 기재된 건설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분권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습니다.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은 1) 계약서에 정한 지분건설 목적물의 이전 기한 도래 후, 또는 2)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 지분건설 목적물이 지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다세대 주택의 공사 중단 및 정지 후다음의 사건 발생 후로서 3) 저당권자(은행)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이행 기한과 무관하게 위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후 진행됩니다.

<연대보증>

지분건설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은행이 연대보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은 지분건설계약이 국가 등록되기 전까지 체결되어야 하고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지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연대책임, 지분건설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의 경우 신규 지분권자에게 연대보증계약상의 권리 이전, 계약으로 정한 지분건설 대상의 이전 기한보다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연대보증 존속기간,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증가되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변경을 포함하여 지분건설계약에 따른 사정 변경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동의
2.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대보증 존속에 대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지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통지 의무

연대보증 존속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연대보증이 소멸되는 경우, 연대보증인과 사업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지분권자에게 연대보증 소멸일 한달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는 연대보증 소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3회에 걸쳐 러시아연방 지분건설법을 중심으로 러시아 주택분양제도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러시아민간주택시장은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전까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는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대규모의 노후 주택 개선문제와 양질의 주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점진적인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JS-Horizon

(최신법령)

1.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의 한시적 도입 등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

1. 법 제234조의2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 등을 매입하여 재무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모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법 제278조의2를 신설하여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2. 법 제12조 제2항 제6호의2,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5호의2, 제21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금융투자업의 신규 또는 변경 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대주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 제10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 발행의무가 면제됩니다.
4.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

2.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제출 등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183호, 2010. 3. 24. 시행)

1.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서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2. 법 제5조에 따르면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민사소송법」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봅니다.

법 제10조에 따르면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서, 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 전자서명을 하여 등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다운로드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183호, 2010. 3. 24. 시행\)](#)

3. 신용카드의 결제대상 확대 등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6. 13. 시행)

1. 법 제2조 제3호를 개정하여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면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2. 법 제2조 제5호의2 및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는 수납대행가맹점을 신설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 개정\(법률 제10062호, 2010. 6. 13. 시행\)](#)

4. 지방세 체계의 전면 개편 등

: 「지방세법」전부 개정(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

1. 현행「지방세법」은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경감 등에 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지방세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지방세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관련 법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한편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지방세법」전부 개정\(법률 제10221호, 2011. 1. 1. 시행\)](#)

JS-Horizon

(지평지성 소식)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수년간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본,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해외직접

투자,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국내 최고의 해외전문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평지성은 그동안 축적된 해외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팀들과 분야별 전문팀들을 집결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해외지역 전문성없이 그때그때 해당지역 로컬 로펌에 의존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 각 국가별 지역전문변호사들과 해외지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해외지역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해외지사는 현지에서 고객들과 밀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지사 및 합작로펌들을 계속하여 설립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M&A 및 금융거래 등의 경험과 전문성없이 현지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M&A, Project Finance, 부동산개발, SOC, 자원개발, 자본시장업무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변호사들과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해외지사장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회사나 우수한 기업들은 한두 나라가 아닌 해외 여러 국가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외 여러 지역들을 동시에 커버해주는 종합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희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더 나아가 북미, 유럽, 중남미,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의 지역전문성을 종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해외사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도]



[연락처]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전화 : 02-6050-0658 | 팩스 : 02-6050-1708 | 이메일 : gbc@js-horizon.com

[관련자료]

- [홈페이지]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 [브로슈어]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PDF)

[관련기사]

- 법률신문 - [인터뷰]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설립 '지평지성'의 양영태 변호사 (2010. 4. 17.)

JS-Horizon

(지평지성 소식)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출범 기념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2010. 4. 15.,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4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관련업계 관계자 350여명을 모시고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평지성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설을 기념하여 개최된 것으로 지평지성의 5개 해외사무소 지사장 변호사들과 라오스 합작로펌 매니징 파트너(라오스 변호사) 등 13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중국, 러시아 및 국제조세, Cross-border M&A,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등을 주제로 총 4개 세션, 14개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의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발표에 이어 별도로 마련한 상담시간을 통해 심도있는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해외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사항들을 잘 설명해주어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업무에 대한 좋은 정보들의 공유를 기대하겠다"며 격려와 당부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해외시장의 주요 동향과 중요 이슈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 업무수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참고자료

1. 관련기사

- 한국경제 - 러시아 투자, 네덜란드 거치면 세금 줄어든다 (2010. 4. 20.)
- 아시아경제 - 법무법인 지평지성, 15일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2010. 4. 14.)
- 서울경제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출범 기념 세미나 (2010. 3. 23.)
- 파이낸셜뉴스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세미나 개최 (2010. 3. 17.)

2. 행사사진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용환 대표변호사



'베트남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변희경 변호사(호치민시티 지사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베트남 부동산 개발 및 하노이 지역 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김주현 변호사(하노이 지사장)



'라오스 외국인투자'를 발표하고 있는 Siri Sayavong 라오스 변호사 (라오스 합작법인 JSH-LLC 매니징 파트너)



'캄보디아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유정훈 변호사(캄보디아 지사장)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를 하고 있는 양영태 대표변호사



'해외투자의 조세문제'를 발표하고 있는 구상수 공인회계사



'중국 시장환경의 변화와 투자전략'을 발표하고 있는 최정식 변호사(상해 지사장)

JS-Horizon

(업무동향)

(주)한성항공 회생계획인가 관련 회생절차상의 업무 대리 및 자문 제공

지난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국내 최초 저가 항공사인 (주) 한성항공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했습니다.

2008년 10월 운항을 중단한 한성항공은 사전에 M&A를 실시한 후인 2009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한성항공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M&A 완료 후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방식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조기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한성항공의 사전 M&A 과정,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및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이르는 회생절차상 모든 업무를 대리 및 자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토마토저축銀 출자사, 한성항공 지분 인수 (2010. 4. 5.)
- 머니투데이 - 한성항공 회생계획안 가결 (2010. 3. 9.)
-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한성항공 기업회생절차 본격 추진 (2010. 1. 26.)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김영주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 PF 사업 관련 분쟁에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

2조 원 규모의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21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천 도화구역 도시개발 PF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인천 최대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체되면서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사이에 사업 지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인천도화구역 PF사업 결국 법정소송 번져 (2009. 12. 10.)
- 아시아경제 - SK건설 컨소시엄, 인천 도화구역 개발 손 댄다 (2009. 11. 9.)

[담당변호사]



이호원 대표변호사



홍성준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김지홍 변호사



최찬욱 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미국기업 국내상장 승인 1호인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을 대리하여 상장 자문 제공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지난 3월 12일 미국기업 중 최초로 한국거래소(코스닥) 상장을 승인 받고 4월 21일 상장한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New Pride Corporation)의 한국 상장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도밍구에즈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복합물류 전문기업인 뉴프라이드는 복합물류산업에서 사용되는 수송용 타이어의 제조공급과 복합물류 운송차량 및 장비의 정비관리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견기업으로 이 분야에서 미국 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11개의 중국계기업과 1개의 일본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이번 뉴프라이드 코퍼레이션의 상장은 미국기업으로서 첫 상장 사례로 한국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IPO팀은 중국, 일본, 라오스 등 다수 외국기업들의 한국 상장 자문업무를 진행하면서 쌓은 최고의 전문성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복잡하고 엄격한 미국 증권법상 규제 문제(Regulation S)와 양국 법제간의 차이를 조정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미국기업 상장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였으며, 금융감독원과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대처해 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미국기업 1호를 성공적으로 상장 자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미국기업의 한국상장 업무에 대해 한층 더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관련기사]

- 연합뉴스 -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 (2010. 4. 21.)
- 이데일리 - 뉴프라이드 청약경쟁률 322.2대 1..이번달 21일 상장 (2010. 4. 13.)
- mbn TV - 뉴프라이드 미국 기업 최초 코스닥 상장 (2010. 4. 1.)
- 매일경제 - 美뉴프라이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2010. 3. 12.)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길영민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JS-Horizon

(업무동향)

여의도 Parc.1 브릿지론 PF 성공적 수행

저희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여의도 파크원(Parc 1) 브릿지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1,600억 원 규모의 금융조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사업은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터(Seoul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건설사업과 함께 여의도의 스카이 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3000억을 투입해 구 통일주차장 부지에 오피스빌딩과 호텔, 쇼핑몰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미 미래에셋그룹이 타워 1동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타워의 매각도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평지성 수행팀은 이번 브릿지론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실사를 하였으며, 그 실사 자료를 바탕으로 브릿지론은 물론 본 PF 과정에서도 대주단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 쟁점을 발췌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파크원, 2000억원 브릿지론 대주단 구성 완료 (2010. 4. 5.)

[담당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이행규 변호사



김이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최수진 변호사



유정한 변호사



홍진경 미국변호사



임주영 호주변호사

JS-Horizon

(지평지성 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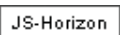
이춘원 변호사,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의 한국 Shipping & Maritime 분야 및 Insurance & Reinsurance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춘원 변호사)

지평지성 해상팀의 이춘원 변호사가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의 한국 Shipping & Maritime 분야 및 Insurance & Reinsurance 분야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로머니에 의하여 발간되는 Asialaw Leading Lawyers는 국내외 회사 임원 및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 9,500명에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야별 대표 변호사를 추천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업무실적 및 평판 등을 심사하여 Leading Lawyer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발행될 예정인 Asialaw Leading Lawyers 2010 Edition에는 이춘원 변호사의 biography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유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김성수 변호사)

2010. 3. 30. 소송파트의 김성수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자유권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3월 1일부터 2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3월 30일 현병철 위원장, 장주영 인권위원(전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

회 활동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유권전문위원회는 검경수사, 교정, 군 인권 분야로 나뉘어 대학교수, 변호사, 인권활동가 등 총 17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법사위원으로 위촉

2010. 3. 1. 김성수 변호사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법사위원으로 위촉되어 3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993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4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금연운동 단체입니다. 2010년 3월부터 2대 회장 서흥관 교수(국립암센터)가 취임하였고 사법위원은 변호사, 법학 및 의과대학의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되어 금연활동에 관한 입법 및 사법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는 2010년 4월 6일에 개최된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최근의 금연운동을 위한 소송 및 입법안 자료에 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이재성 변호사

jslee@js-horizon.com

□ 학력사항

- 서울 상문고등학교 제22회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전공 (2002-)

□ 경력사항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법무부 공익법무관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년 4월 1일자로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지평지성의 회사파트의 일원이 된 변호사 이재성입니다.

좋은 곳에서 훌륭한 선배님들을 모시고 배우면서 일할 기회를 얻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객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김다희 변호사

dhkim@js-horizon.com

□ 학력사항

- 전남외국어고등학교 제3회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경력사항

-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2010년 4월 1일부터 해상·보험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201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지평지성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만큼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노력과 열정으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동료와 고객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주현철 미국변호사

hcchoo@ js-
horizon.com

□ 학력사항

- Boston University (B.A. in Economics, magna cum laude, 1999)
- Boston University (M.A. in International Relations, 2000)
- Boston University (M.A. in Economics, 2002)
- 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2005, Paul J. Liacos Scholar)

□ 경력사항

-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2005)
- 법무법인 서정 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미국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주현철 미국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깊은 신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임주영 호주변호사
jyim@js-horizon.com

□ 학력사항

- 호주 Lake Joondalup Baptist College 졸업 (1999)
- 서울대학교 법대 수학 (교환학생, 2003)
- 호주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졸업 (B.A./LL.B., 2004)
- 호주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Diploma in Law 수료 (2005)
- 호주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졸업 (LL.M., 2010)

□ 경력사항

- 호주 검찰청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
- 법무법인 평산 호주변호사
- 법률사무소 재인 호주변호사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2010년 3월 29일부터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금융파트에서 근무하게 된 임주영 호주변호사입니다.

뛰어난 업무실적과 능력, 훌륭하신 변호사님들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일원이 되어 기쁘며, 선박금융을 포함한 저의 지난 금융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분야의 법률전문가로서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영입인사)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

kiban@js-horizon.com

□ 학력사항

- 뉴질랜드,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법학과 졸업 (LL.B., 2008)
- 뉴질랜드, College of Law New Zealand, Professional Legal Training (2009)
- 호주, The University of Sydney 법학대학원 졸업 (LL.M., 2010)

□ 경력사항

- 뉴질랜드 변호사 (2009)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3월 29일부터 지평지성에서 근무하게 된 반기일 뉴질랜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의 첫 시작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S-Horizon



지평지성
JISUNG HORIZON

<http://www.js-horizon.com>

법무법인 지평지성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050-1600 Fax : 02)6050-1700

강북 분사무소

(100-161)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25 HSBC빌딩 15층 Tel : 02)6230-7400 Fax : 02)6230-7599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050-0658 Fax : 02)6050-0708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호치민 사무소

#2205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 Dis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o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070-8275-4940 Fax : 856-21-264-344